

화순군수리계조례안

1. 심의주문

화순군수리계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수리계의 조직, 운영에 관한 관계법(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)개정으로서·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기반시설의 관리

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음(안제3조1항)

나. 수리계의 조직

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(안 제4조)

다. 수리계원의 자격

-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는 토지소유자
-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을 가진자(안제7조)

라. 경비의 부담

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징수할 수 있음(안제11조)

마. 수리계의 해산

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음(안제15조)

바. 수리계의 지도·감독

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(안제16조)

4. 제정조례안 : 별첨

5. 관계법령

- 진라남도 농기 51331 - 145 (2002. 1. 30)
- 농업기반공사및농자관리기금법제43조

화순군수리계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농업기반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43조제2항 및 농법 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농업생산기반시설”이라 함은 농어촌정비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설을 말한다.
2. “규약”이라 함은 수리계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약관을 말한다.
3. “수혜지역”이라 함은 수리계가 관리하는 농업생산기반시설(이하 “기반시설”이라 한다)로부터 이익을 받는 지역을 말한다.

제3조(기반시설의 관리) ①군수는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.

②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를 조직하기 곤란하거나 이용자가 수리계를 조직하지 아니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당해 기반시설의 이용사중에서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게 할 수 있다.

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

1. 규약
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
3.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
4. 수혜지역구역도(축적 2만 5천분의 1 지도)

②수리계의 조직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. 다만 군수가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기준을 달리할 수 있다.

1. 수혜사의 수가 5인 이상일 것
2. 수혜지역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이상일 것

제5조(수리계의 등록) 군수는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을 받은 때에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제4조의 기준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수리계 등록대장에 기재하고,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.

제6조(규약의 기재사항) ①수리계의 규약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
1. 목적
2. 명칭
3. 수리계 구역
4. 사무소의 소재지
5. 수리계원의 자격 및 임원에 관한 사항
6. 총회 및 대의위원회에 관한 사항
7. 사업·경비부과·회계 및 업무집행등에 관한 사항
8. 수리계의 해산에 관한 사항
9. 기타 필요한 사항

②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얻어 규약을 변경할 수 있으며, 변경된 규약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제7조(수리계원의 자격) 수리계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.

1.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는 토지소유자
2. 수리계 수혜지역 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(등기된 임차권을 포함한다)을 가진 자

제8조(총회) 수리계에는 총회를 두며,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 다만, 수리계원이 20인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회에 갈음하는 대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9조(임원) ①수리계에는 임원으로 수리계원 중에서 계장 1인과 간사 2인이내를 두며, 선출방법·임기 등 필요한 사항은 규약으로 정한다.

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 업무를 담당한다.

제10조(수리계의 임무) ①수리계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.

1.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(개 보수를 포함한다) 및 그 이용
2. 기반시설의 재해복구
3. 수리 계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항

②수리계는 시제적으로 시행이 곤란한 기반시설의 재해복구와 개보수 등에 대하여는 군수에게 필요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, 군수는 예산 및 인력 등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.

제11조(경비의 부담) ①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징수할 수 있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의한다.

1. 운영경비 : 기반시설의 유지관리비 진액
2. 손괴된 기반시설의 복구비 : 소요 비용 중 지방자치단체 등의 보조 또는 지원으로 충당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
3. 기반시설의 감가상각비 : 설치사업비를 내용연수로 나눈 금액

③수리계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경비를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그 부과 금액 및 납입기한에 관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인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④수리계의 부과경비에 대하여 제남한 계원이 있을 때에는 법 제43조 제4 항 및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.

제12조(경비부과의 조정신청) ①수리계원은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경비부과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수리계원은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리계장에게 부과금액의 이의를 신청할 수 있으며, 수리계장은 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조정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리계장의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신청인은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군수에게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군수는 14일 이내에 이를 재결하고 그 결과를 수리계장과 신청인에게 각각 통지하여야 한다.

제13조(예산 및 회계) ①수리계는 다음 연도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작성하여 당해연도 11월말까지 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.

②수리계는 연도 개시이후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과 수지예산을 변경할 수 있다.

③수리계는 매년도 결산보고서 및 사업보고서를 작성하여 다음연도 2월말까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④수리계의 회계와 감가상각비 등 자금관리에 대하여는 규약으로 정한다.

⑤군수는 매년도 개시 3개월전까지 수리계의 예산편성 및 집행에 대한 지침을 시달할 수 있다.

제14조(서류의 비치) 수리계장은 다음 각호의 서류를 사무소에 비치하고, 수리계원의 열람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1. 수리계 등록신청 관계서류
2. 규약, 수리계원 명부 등 규약에서 정한 서류

제15조(수리계의 해산) ①수리계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다. 다만,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.

1. 수혜지역이 공사관리지역으로 편입될 때
2. 수혜지역이 도시구역 또는 산입단지 조성 등의 사유로 감소되어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
3. 천재·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기반시설이 손괴되어 그 개·보수에 경제성이 없게 된 때

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장은 당해 기반시설과 제14조의 서류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.

1.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해당 농업기반공사
2.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자치단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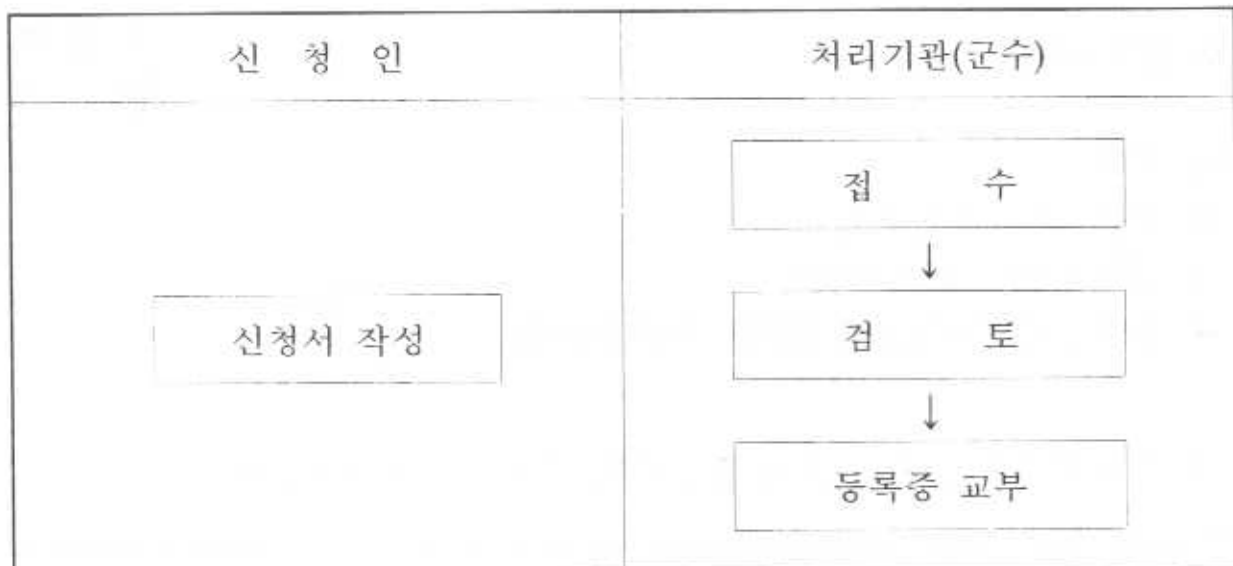
③군수는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로 수리계가 해산된 경우에는 수리계가 관리하던 기반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. 다만, 기반시설을 폐지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기반시설의 관리자를 지정하여 기반시설을 유지·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.

수리계등록신청안내

(뒷쪽)

제출 및 처리기관	군 수
<p>규 범 거 근</p>	<p>제4조(수리계의 조직) ①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자격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. 규약 2. 임원 및 수리계원 명부 3. 임원선출에 관한 회의록 4. 수해지역구역도(축적 2만5천분의 1지도)

※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.



【별지 제3호 서식】

수 리 계 등 록 증

계 의 명 칭 :

성 명(대표자) :

주민등록번호 :

주 소(소재지) :

구 역 면 적 : ha

수 혜 면 적 : ha

수리계관리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등록하였음을 증명합니다.

년 월 일

화 순 군 수(인)

화순군수리계조례안

의안	
번호	

제출년월일 : 2002. 4. .
제 출 자 : 화 순 군 수

1. 제안이유.

수리계의 조직, 운영에 관한 관계법(농업기반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)개정으로서·도지사의 권한사항이 시장·군수의 권한으로 이양되어 조례를 제정코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기반시설의 관리

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기반시설의 유지·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당해기반시설의 이용자로 하여금 수리계를 조직 운영하게 할 수 있음(안 제3조1항)

나. 수리계의 조직

수리계를 조직하고자 하는 기반시설의 이용자는 수리계원 자격자 총회를 개최하여 수리계원 자격자 3분의2이상의 동의를 얻어 규약을 작성 군수에게 등록신청을 하여야 함(안 제4조)

다. 수리계원의 자격

-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는 토지소유자
- 수리계 수혜지역안의 토지를 농업의 목적으로 사용·수익하기 위하여 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외의 물건을 가진자 (안제7조)

라. 경비의 부담

수리계는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원으로부터 사업에 필요한 경비 징수할 수 있음 (안제11조)

마. 수리계의 해산

수리계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수리계를 해산할 수 있음(안제15조)

바. 수리계의 지도·감독

수리계는 군수가 지도감독 (안제16조)